

비과세종합저축 특약

제 1 조 약관의 적용

비과세종합저축(이하 '저축'이라 합니다)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, 은행이취급하는 각종 예금·신탁·채권 등 (이하 '예금' 등이라 합니다)의약관(특약 포함)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자

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(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- 1. 만 65세* 이상인 거주자 *다만, 2015년 가입자 : 만 61세 이상, 2016년 가입자 : 만 62세 이상, 2017년 가입자 : 만 63세 이상, 2018년 가입자 : 만 64세 이상
- 2.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- 3.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
- 4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
- 5.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6. 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



5.18민주화운동부상자

제 3 조 대상예금 등

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예금 등과 각 취급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예금 등은 제외합니다.

- 1.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예금 등 : CD, 표지어음, 무기 명정기예금 등
- 2. 어음·수표 등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예금 등 : 당좌예금, 가계 당좌예금
- 3.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기 취급중인 비과세 예금 등
- 4. 외화예금

제 4 조 예치한도

- ① 이 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예금 등 계좌의 예치한도는 원금을 합하여 5천만원(다만,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② 이 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은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최종이자원가로 인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한도에 포함합니다.
- 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이 저축의 한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.

제 5 조 예치한도 산정

①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합니다.



- ② 정액(정기)적립식 예금 등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③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,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.

제 6 조 예치한도 변경

이 저축의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제 7 조 비과세처리

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한다.

제 8 조 표시방법

이 저축가입자는 신규가입시 `비과세종합저축`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은행은 통장의 표지·내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`비과세종합저축`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
제 9 조 적용이율

이 저축으로 가입한 각 예금 등의 적용이율은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제 10 조 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

거래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, 상속인은 은행에 이 저축의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, 이때 은행은 당초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.



다만, 신탁·채권 등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 11 조 저축의 전환여부

이 저축과 이 저축이 아닌 예금 등은 상호 전환할 수 없습니다.

제 12 조 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

제11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하여 가입한 때는 거래처가 이 저축으로 선택한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일반과세계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.

제 13 조 명의변경 등

명의변경 및 양수·도는 허용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.

제 14 조 예치한도 초과 입금 제한에 따른 책임

예치한도 초과로 입금(무통장입금 및 타행환송금 포함)이 되지 않아 수표의 지급결제 불가,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,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0.1.1부터 시행합니다.

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